■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칙 [별지 제33호서식]

(　　)사업자 변경신고서

※ 바탕색이 어두운 곳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　　즉시

신고인	법인명(상호)	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
	대표자	주민등록번호
	사업의 종류	방송분야(방송채널 사용사업자로 한정합니다)
	방송유형(방송채널 사용사업자로 한정합니다)	허가·승인· 등록·신고번호
	주된 사무소의 소재지[주1)]	(전화번호:　　)

주1) 방송채널사용사업을 신고한 자로서 별도의 주된 사무소를 운영하지 않는 경우 종합편집실 또는 법인 대표주소를 명기

	변경사항		변경 전	변경 후
변경 내용	대표자	성명		
		주민등록번호		
	방송편성 책임자	성명		
		주민등록번호		
	법인명(상호)			
	주된 사무소의 소재지			

변경사유	
변경일	

「방송법」 제1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칙 제14조제8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.

년　　월　　일

신고인　　(서명 또는 인)

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귀중

신고인 제출서류	1. 아래 서류는 지상파방송사업자,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,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편성 방송채널사업자에 한정합니다. (1) 이력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.(대표자 및 방송편성책임자 변경에 한정합니다) (2) 선임 및 임명 서류(이사회 의사록, 임명공문 등(대표자 및 방송편성 책임자 변경에 한정합니다)) 각 1부. (3) 이사회 의사록(법인명(상호)·주된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에 한정합니다) 1부. 2. 지상파방송사업자,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,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편성 방송채널사업자 이외의 사업자는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.	수수료 없음
담당 공무원 확인사항	1.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. 건물 등기사항증명서(방송채널사용사업로 한정합니다) 3. 사업자등록증명(전광판방송사업 및 음악유선방송사업로 한정합니다) 4. 신청인(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합니다) 및 편성책임자의 주민등록표 초본	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제3호 및 제4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*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신고인(대표자)　　성　　명　　(서명 또는 인)

편성책임자　　성　　명　　(서명 또는 인)

210㎜×297㎜[백상지 80g/㎡(재활용품)]